



동작구



수신자 내부결재
(경유)

제목 시설관리공단 비상임이사 직무대행 승인

1. 관련근거

가. 지방공기업법 제59조 및 동법시행령 제57조

나.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-2416(2015.11.4)호 ‘비상임이사 직무대행 승인 요청

2. 공단 이사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15.11.2일자로 임기가 만료된 비상임이사(김기봉)에 대해,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 까지 직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직무대행을 승인하고자 합니다.

가. 대 상 자 : 비상임이사 김기봉

나. 기존임기 : 2014.11.3 ~ 2015.11.2 (1년/2회 연임)

다. 직무대행 기간 : 2015.11.3 ~ 후임자 임명시 까지 (‘15.12월 공모 예정)

※ 참고사항

- ☞ **지방공기업법 제59조(임기 및 직무) 제1항**
공사(공단)의 사장,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기가 만료된 임원으로 하여금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 까지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.
- ☞ **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7조(임기만료임원에 의한 직무대행)**
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가 만료된 임원으로 하여금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.
 1. 연임을 위하여 그 재임명에 관한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
 2.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대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

끝.

